

Certificat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법인 기업)

(유효기간 2022.04.01~2023.03.31)



# CONTENTS

01

온라인 자료 제출 (1 ~ 9p)

02

제출 자료 조회 (10 ~11p)

03

확인 신청 작성 (12 ~24p)

04

진행 상황 보기 (25~27p)

05

과거 규모확인 추가절차 진행 (28~35p)

※ '소상공인유예검토' 대상 기업만 진행

06

확인서 출력 / 수정 (36 ~ 38p)



홈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 T -

중소기업현황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고객센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범위 확인 >



아이디  
비밀번호  
 아이디저장  
로그인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회원가입**  
중소벤처24 EasyPass →

**2**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는 자료제출 → 신청서 작성 · 제출 순입니다. 반드시 STEP 01 ~ STEP 05 순서로 클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로드

회원가입 후 STEP 1~5 사항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TEP 1. 온라인 자료제출 :**

1. 자료제출 프로그램 설치하여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를 사용하여 신규이용자 등록한 후 재무자료 및 원천세 신고자료 자료제출
2. 회계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전자신고파일 제출 (국세청에 신고한 동일파일)

**STEP 2. 제출자료 조회 :** 온라인으로 제출한 자료를 항목별로 조회가능

**STEP 3. 신청서 작성 :** 자료제출 완료 후 신청서 작성 (제출할 자료가 없으면 STEP 3 부터 진행 가능.)

**STEP 4. 진행상황확인 :** 신청서 작성 후 오류 발생시 오류 발생 사항 확인

※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기업의 경우 [과거 규모 확인절차] 추가 진행(필수)

**STEP 5. 확인서 출력/수정 :** 확인서 출력 및 수정이 가능



홈 로그인 나의정보 사이트맵 중소벤처24 통합로그인 + T -

- 중소기업현황
- 중소기업 범위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고객센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범위 확인 >

중소기업현황시스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로그아웃

회원정보수정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는 자료제출 → 신청서작성 · 제출 순입니다. 반드시 STEP 01 ~ STEP 05 순서로 클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자료제출' 클릭**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로드

공지사항 >

|   |            |
|---|------------|
| ☆☆☆ 서비스 점검 안내 2022.02.26일 (토) am 7시 ~ 2...  | 2022-02-25 |
| ☆☆☆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 안내 2021.11.16(화) 19...      | 2021-11-02 |
| ★★★ 서비스 점검 안내 2021.10.29(금) pm 20시 ~ 202... | 2021-05-04 |
| ★★★★ 2021년 중소기업확인서_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         | 2021-03-02 |
| 202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          | 2021-02-26 |
| 2021년 중소기업확인서_전자신고파일 제작 이용 매뉴...            | 2021-01-19 |
| ★★ 긴급공지 ★★★ 1357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2020-09-24 |

자주하는 질문 >

|                                    |            |
|------------------------------------|------------|
| 기존 담당자가 퇴사 했구요. 사용하던 아이디는 비밀번...   | 2022-01-06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 ...   | 2021-11-17 |
| 나라장터에 중소기업 공공입찰 참여 하려고 하는 기업입...   | 2021-05-12 |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사이트에서 중소기업확인...    | 2021-05-12 |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 | 2021-07-07 |
| 유효기간은 어떻게 나오는지요?                   | 2022-01-21 |
| 유효기간이 지난 과거 확인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 2021-04-06 |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오후 12:00 ~ 13:00

중소기업범위 해설서 >

**\* 법인기업 제출자료**

- 결산이 완료된 **최근 3개년 법인세 신고자료(또는 전자신고파일)**  
 ex) 12월 결산 3월 신고 기업 : 2019, 2020, 2021년 법인세 전자신고파일 제출  
 6월 결산 9월 신고 기업 : 2020, 2021, 2022년 법인세 전자신고파일 제출
- **최근 1개년 원천세 신고자료(또는 전자신고파일)**  
 (마지막 법인세 결산한 연도에 해당하는)  
 ex) 12월 결산 3월 신고 기업 : 2021년 원천세 전자신고파일  
 6월 결산 9월 신고 기업 : 2021년 7월 ~ 2022년 6월 원천세 전자신고파일

# 온라인 자료제출

1

- 자료제출(법인기업)
- 자료제출(개인기업)

## 제출서류목록

| 제출서류   | 자료제출방법   | 주의사항  | 온라인제출 프로그램  |
|--|--|---|---|
| 1. 최근 3개년 (2019, 2020, 2021) 재무제표<br>2. 최근 3개년 (2019, 2020, 2021)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br>3. 최근 1개년(2021)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지정포함)<br><br><b>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하지 않도록 함</b><br><br>직전년 결산신고 이후, 정기신고의 경우 해당연도는 신고일로부터 자료제출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신고 당일의 경우 회계 프로그램으로 직전년(2021년) 법인세 전자신고파일로 제출 | 1. 상단 메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 자료 제출] 클릭<br>2. 자료제출(법인기업) 탭 → [자료제출 프로그램 자동설치(실행)] 클릭<br>3. '자료전송 프로그램' 설치<br>4.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br>5. 제출자료 선택 → 전송<br><br>* PDF, 엑셀, jpg, zip 파일은 제출 불가 | ※ 법인세 수정/기한 후 신고자료의 경우 자료제출 불가<br>※ 원천세 수정/기한 후 신고자료의 경우 자료제출 불가<br>※ 자료전송 프로그램은 회원가 입मत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세무대리인 이용가능><br>※ 자료전송 프로그램 로그인은 반드시 국세청에 등록된 로 로그인<br>※ 직전 또는 당해 연도 창업기업은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가능.<br>(합병/분할, 관계기업 보유기업, 소상공인 유예 검토 대상기업 제외)<br>※ 소상공인 유예 검토 대상기업의 경우 과거 규모 확인 절차가 진행해야 하며, 단계별 진행 절차에 따라 과거 자료제출 및 과거 규모 확인 위한 선택 항목을 작성해야 함 | 온라인자료제출 매뉴얼<br>📄 자료제출 매뉴얼<br><br>온라인자료제출 프로그램 설치<br>1. ⚙️ 자료제출 프로그램 자동설치(실행)<br>2. ⚙️ 자료제출 프로그램 수동설치<br>3. 위의 제출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거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아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제출 가능<br>⚙️ 전자신고파일 제출 프로그램 수동설치 |

1. '자료제출 (법인기업)' 탭 클릭
2. 자료 제출 프로그램 자동설치(실행)
  - '자료 제출 프로그램 자동설치(실행)' 클릭 하여 팝업창이 뜨면, [증빙자료 제출하기] 버튼 클릭하여 자료제출 프로그램 설치
  - 온라인 자료제출 프로그램 설치 완료 후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이용자 등록 후 로그인 하여 자료제출
3. 전자신고파일 제출프로그램 수동설치
  - 자료 제출 프로그램 자동설치가 되지 않을 경우 클릭하여 수동으로 설치
  - 회계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전자신고파일 제출 (국세청에 신고한 동일파일)

## 자료제출 프로그램 설치 진행 순서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한 증빙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 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 **1** 등록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온라인 자료제출이 가능합니다.

**증빙자료 제출하기**

- 제출한 자료는 업무제출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주)의 FND System를 통해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 자료제출 프로그램 이용권 유효기간: 국세청 공백스와 동등한 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 최초 자료 제출시에는 제출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 (최초 프로그램 설치시에는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 인터넷 브라우저가 종료됩니다.)
  - 개인사업자적 경우, 정보제공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직접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이용절차 및 프로그램 설치문의 ☎ 02-3215-2674 또는 [화]-[고객센터]-[이용문의] (운영시간: 평일 9:00~18:00)



QuickFind 설치 마법사 시작

한국기업데이터 QuickFind를 컴퓨터에 설치하는 데 필요한 과정을 안내합니다.

결과: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법과 국제 법령의 보호를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판매, 배포하는 합법적인 인사 및 영업 프로그램, 기증, 사용이 됩니다.

**2**

QuickFind 설치 폴더 선택

QuickFind를(을) 다음 폴더에 설치합니다.

이 폴더를 설치하려면 '다음'을 클릭하고, 다른 폴더에 설치하려면 마우스를 클릭하여 다른 폴더를 클릭하십시오.

폴더(F): C:\WINDOWS\QUICKFIND 2.0\

**3**

QuickFind 설치 확인

QuickFind를(을) 컴퓨터에 설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설치를 시작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4**

QuickFind 설치

QuickFind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5**

QuickFind 설치 완료

QuickFind를(을) 설치했습니다. 끝나려면 '닫기'를 클릭하십시오.

Install Complete.

**6**

신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중입니다.

20222 / 138062 Byt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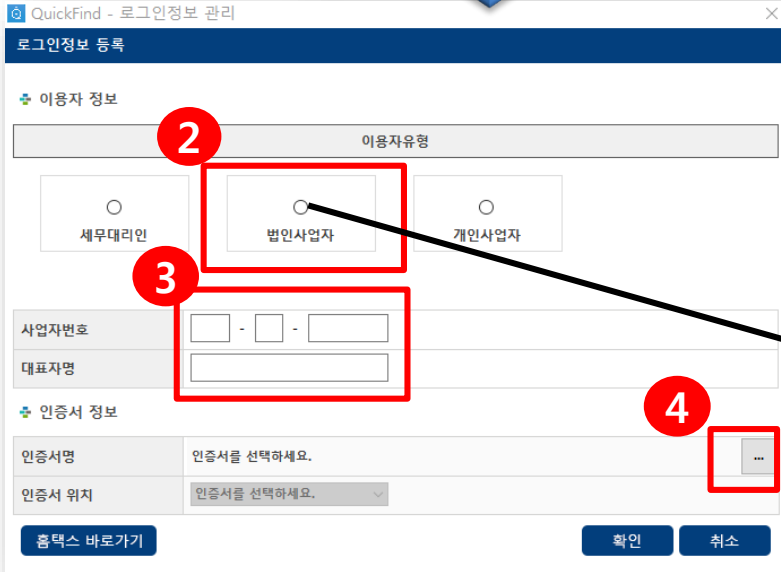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

Quick Find

**로그인**

**신규 사용자 등록**

이용가능일 | 고객지원센터 02-3215-2674



**1. 신규이용자등록 선택**

**2. 이용자유형 [법인사업자] 선택 및 전송자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동의(필수)**

- 등록할 이용자 유형을 선택 시, 아래와 같이 해당 유형별 약관동의 화면이 표시됩니다.

**3. 이용자 정보 입력(신청기업)**

- 로그인 대상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인증서 선택**

- 인증서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자 공동인증서]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서목록

인증서가 안보이는 경우 왼쪽 하단의 『PFX가져오기』에서 최 하단부 버튼 클릭 후 설명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가져오기 후에 "새로고침"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서 목록을 새로고침 해주세요.

인증서위치  하드디스크  이동식디스크

| 인증서명  | 발급일        | 만기일        | 발급기관  | 인증서종류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용정보통신(주) | 2019/05/23 | 2020/06/11 | KFB   | yesignCA Class 2 |
| <input type="checkbox"/> 김석                   | 2019/01/25 | 2020/01/25 | WOORI | yesignCA Class 2 |
| <input type="checkbox"/> 이준(hitax)            | 2018/12/10 | 2019/12/10 | HNB   | yesignCA Class 2 |
| <input type="checkbox"/> 지엔티소프트               | 2019/05/21 | 2020/05/21 | WOORI | yesignCA Class 2 |

PFX 가져오기    새로고침    **확인**    취소



로그인정보 등록

이용자 정보

이용자유형

세무대리인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개인

사업자번호    000 - 00 - 00000

인증서 정보

인증서명    기용정보통신(주)

인증서 위치    C:\Program Files\WPKI\yesign

홈택스 바로가기    **확인**    취소

**1.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 선택**

- PC에 저장되어 있는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 선택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 공동인증서만 가능)
- 인증서가 usb 등 이동식디스크에 위치한 경우 『인증서위치』란에서 이동식디스크를 클릭 후 인증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인증서 선택하고 '확인' 클릭**

**3. 인증서 등록 완료 시 '확인' 클릭하여 이용자등록 완료**





**1. 로그인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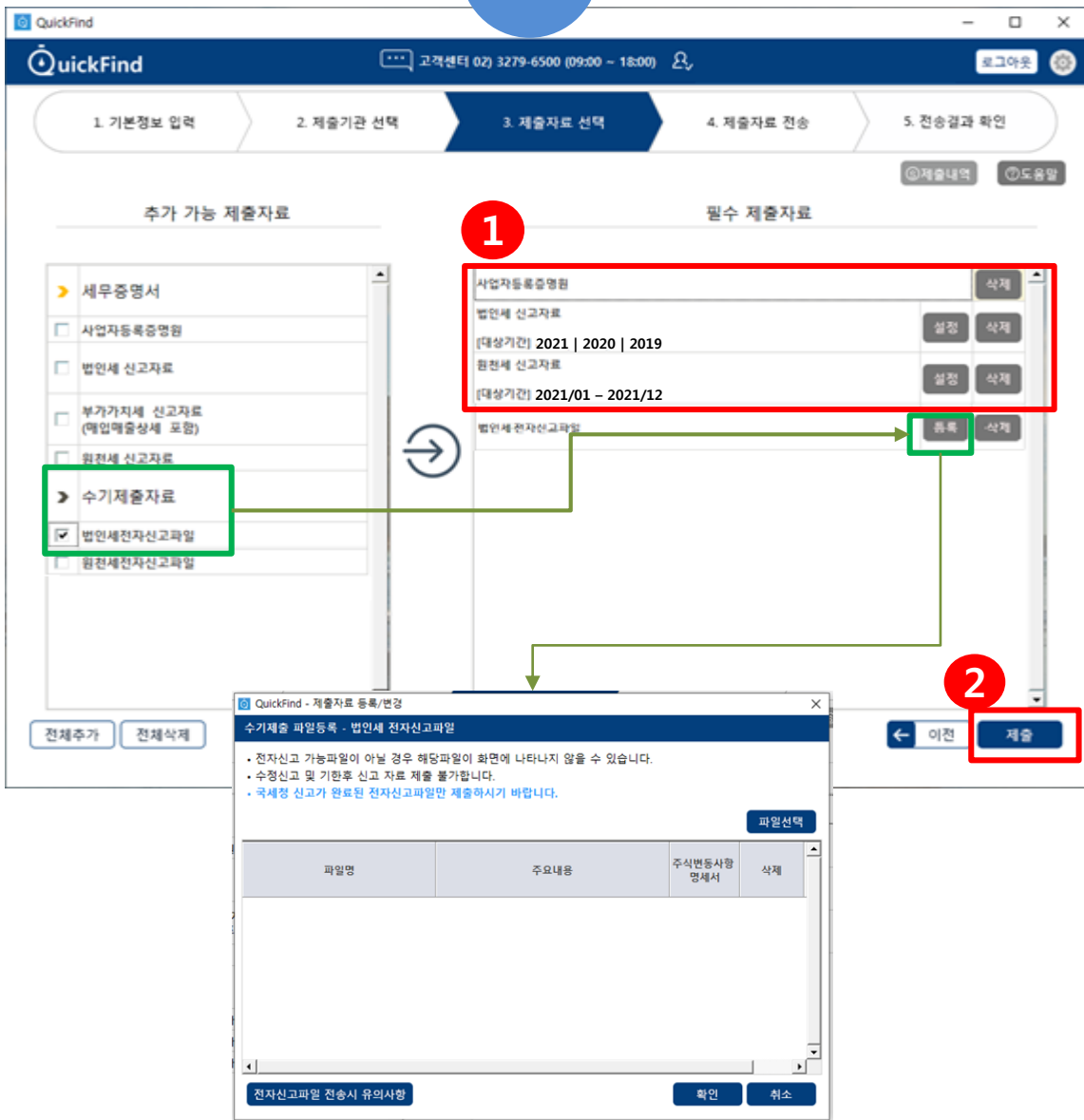
**2. 로그인 정보에 기업정보 확인 후 결산월 선택**

- 로그인 정보가 자동으로 출력표시 됩니다.
- 법인기업의 결산월 선택합니다.

**3. 전송자 정보 입력**

- 전송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입력합니다.

**4. '다음' 클릭**



**1. 필수자료제출**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한 필수자료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기존에 온라인으로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설정]을 클릭하여 이미 제출한 자료는 삭제하고, 나머지 자료만 제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 클릭**

※ 자료제출 시 주의 사항

법인세, 원천세 등 수정,기한 후 신고자료의 경우 자료제출 불가

\*PDF,엑셀,jpg ,zip 파일은 제출불가

※ 참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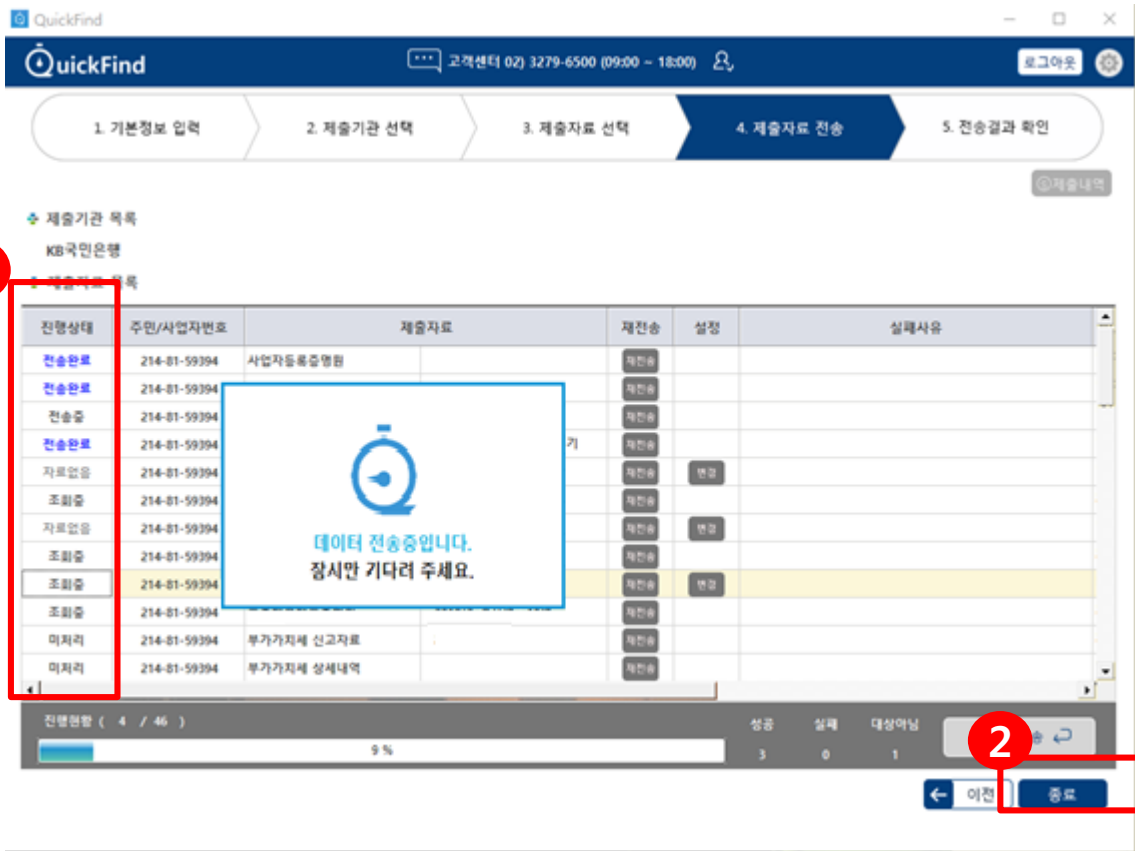
법인세 신고 당일 또는 자료제출 시 오류 등으로 자료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회계프로그램에서 전자신고파일을 제작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수기제출자료]에서 '법인세 전자신고파일' 선택 하여 필수자료제출 칸으로 이동

참고-2. 전자신고파일 [등록] 클릭

참고-3. [파일선택] 클릭하여 pc에 저장한 전자신고파일 선택>전자신고파일 암호 입력 후 업로드 (전자신고파일은 회계프로그램으로 제작 해야함)

참고-4. [확인] 클릭 시 업로드 완료 됨



**1. 진행 상태확인**

- 2021,2020,2019 법인세 신고자료와 2021년 원천세 신고자료(12개월) 분이 (12월 결산의 경우) 모두 전송 완료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 사업기간이 1~12월이 아닌 기업은 최근 결산한 사업기간에 맞는 자료전송

**2. '종료' 클릭**

- 제출자료 전송 완료 후, [종료]버튼 클릭 시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 진행상태가 전송완료가 아닌 전송실패로 뜬다면 인터넷 옵션 설정 재확인 및 법인세신고 수정신고,또는 기한후신고 하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옵션 설정방법**

제어판>네트워크 및 인터넷>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인터넷옵션>일반>설정>임시인터넷파일을>'웹페이지를 열 때마다'로 설정



홈 로그인 나의정보 사이트맵 중소기업24 통합로그인

중소기업현황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고객센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범위 확인 >



중소기업현황시스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로그아웃

회원정보수정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는 자료제출 -> 신청서 작성 - 제출 순입니다. 반드시 STEP 01 ~ STEP 05 순서로 클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TEP 01 온라인 자료제출

**STEP 02 제출자료 조회**

STEP 03 신청서 작성

STEP 04 진행상황 확인

STEP 05 확인서 출력/수정

챗봇

'제출자료 조회' 클릭

공지사항 >

- ☆☆☆ 서비스 점검 안내 2022.02.26일 (토) am 7시 ~ 2... 2022-02-25
- ☆☆☆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 안내 2021.11.16(화) 19... 2021-11-02
- ★★ 서비스 점검 안내 2021.10.29(금) pm 20시 ~ 202... 2021-05-04
- ★★★★ 2021년 중소기업확인서\_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 2021-03-02
- 202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 2021-02-26
- 2021년 중소기업확인서\_ [전자신고파일 제작 이용 메뉴... 2021-01-19
- ★★ 긴급공지 ★★ 1357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2020-09-24

자주하는 질문 >

- 기존 담당자가 퇴사 했구요. 사용하던 아이디는 비밀번호... 2022-01-06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 ... 2021-11-17
- 나라장터에 중소기업 공공임찰 참여 하려고 하는 기업입... 2021-05-12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사이트에서 중소기업확인... 2021-05-12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 2021-07-07
- 유효기간은 어떻게 나오는지요? 2022-01-21
- 유효기간이 지난 과거 확인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1-04-06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오후 12:00 ~ 13:00

중소기업범위 해설서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문의

- 일반상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 02-3215-2674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서 작성 및 법령문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번호 및 주소 안내 ➡

관련 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장터 1번가

중소벤처기업부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공정거래는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사업 이것이 궁금해요 #알려줘\_중기씨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기업데이터 Korea Enterprise Data

중소기업 성공 뒷받침 기업마당

WORKNET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제출자료 조회

- 발급절차 안내 +
- 온라인 자료제출
- 제출자료 조회**
- 신청서 작성
- 진행상황 확인
- 확인서 출력/수정
- 발급안내 문의처

**1** 자료조회(온라인 제출프로그램)

자료조회 (국세청과세자료제출)

**2** 제출서류 조회

자료조회 원천징수\_전자신고(개인, 법인) v

제출기간조회 2021-03-02 2022-03-02

| No | 업체명       | 사업자번호        | 제출자료 기준일          | 제출자료명     | 자료제출일                  | 제출자명 | 원천구분 |
|----|-----------|--------------|-------------------|-----------|------------------------|------|------|
| 2  | 힘내세요 중소기업 | 000-00-00000 | 20200101-20220131 | 원천징수_전자신고 | 2022/02/11<br>11:10:18 |      |      |
| 1  | 힘내세요 중소기업 | 000-00-00000 | 20200101-20201231 | 원천징수_전자신고 | 2022/02/10<br>19:40:35 |      |      |

« < 1 > »

주) 온라인으로 자료제출 후 시스템 반영시까지의 일정시간(10분~30분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 자료조회(온라인 제출프로그램) 선택**

**2. 조회할 자료 선택 및 기간을 설정하여 검색**

**3. 제출된 자료조회 확인**

- ① 법인세 신고자료 → 재무제표(개인, 법인),
- ② 법인세 신고자료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법인)
- ③ 원천세 신고자료 → 원천징수\_전자신고(개인, 법인)

① 자료조회 항목 [재무제표(개인, 법인)] 선택 ⇒ [검색] 버튼 클릭  
 - 조회된 **재무제표 자료내역이 최근 3개년(19년, 20년, 21년) 확인** →  
 [재무제표] 버튼 클릭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수치 모두 확인

② (법인사업자만) 자료조회 항목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선택  
 ⇒ [검색] 버튼 클릭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내역 최근 3개년(19년, 20년, 21년) 확인** **必**  
 - 재무제표 등의 자료가 누락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되지 못한 경우 기업(본사)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으로 서류 접수

③ 자료조회 항목 [원천징수\_전자신고(개인, 법인)] 선택 ⇒ [검색] 버튼 클릭  
 - **조회된 원천세 자료내역이 '21.01월~21.12월(12개월) 맞는지 확인(12월 결산법인의 경우)**  
 → [원천징수\_전자신고] 버튼 클릭 → 12개월 근로자 인원 확인

\* 오프라인(우편) 제출 자료는 제출자료조회 메뉴에서 조회되지 않음  
 \* 원천세 신고자료 등의 자료가 누락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되지 못한 경우  
 기업(본사)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으로 서류 접수



홈 로그인 나의정보 사이트맵 중소벤처24통합로그인

중소기업현황

중소기업범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고객센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범위 확인



중소기업현황시스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로그아웃

회원정보수정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는 자료제출 → 신청서 작성 · 제출 순입니다. 반드시 STEP 01 ~ STEP 05 순서로 클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TEP 01 온라인 자료제출

STEP 02 제출자료 조회

**STEP 03 신청서 작성**

STEP 04 진행상황 확인

STEP 05 확인서 출력/수정

챗봇

'신청서 작성' 클릭

공지사항

- ☆☆☆ 서비스 점검 안내 2022.02.26일 (토) am 7시 ~ 2... 2022-02-25
- ☆☆☆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 안내 2021.11.16(화) 19... 2021-11-02
- ★★ 서비스 점검 안내 2021.10.29(금) pm 20시 ~ 202... 2021-05-04
- ★★★ 2021년 중소기업확인서\_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 2021-03-02
- 202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 2021-02-26
- 2021년 중소기업확인서\_전자신고파일 제작 이용 매뉴... 2021-01-19
- ★★ 긴급공지 ★★ 1357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2020-09-24

자주하는 질문

- 기존 담당자가 퇴사 했구요. 사용하던 아이디는 비밀번호... 2022-01-06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 ... 2021-11-17
- 나라장터에 중소기업 공공입찰 참여 하려고 하는 기업업... 2021-05-12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사이트에서 중소기업확인... 2021-05-12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 2021-07-07
- 유효기간은 어떻게 나오는지요? 2022-01-21
- 유효기간이 지난 과거 확인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1-04-06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오후 12:00 ~ 13:00

중소기업범위 해설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문의

- 일반상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 02-3215-2674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서 작성 및 법령문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번호 및 주소 안내

관련 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장터 1번가



중소벤처기업부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공정거래는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사업 이것이 궁금해요  
#알려줘\_중기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발급절차 안내
- 온라인 자료제출
- 제출자료 조회
- 신청서 작성**
- 진행상황 확인
- 확인서 출력/수정
- 발급안내 문의처

신청서 작성

제출자료의 사실관계에 대한 동의

중소기업확인서신청 시 신청기업의 정보 및 경영일체재안여부 확인서 등을 허위 또는 잘못 입력하여 발생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으며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허위자료 제출 (등 시스템 신청서 및 확인에 작성 입력한 사항 포함)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및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자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아 중소기업사책에 참여한 경우 중소기업 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5년 미만은 시정은 무효 또는 취소 및 회수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는 신청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개인 신용정보는 중소기업 여부 판단 및 공시사항 전달 등 목적 외로만 활용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신용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등 연락처 정보

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업무의 관하여 담당 공무원에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국세청 과세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는 신청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판단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국세청 과세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국세청 과세 정보는 중소기업 범위 판단 등의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수집하는 국세청 과세 정보

원천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기업과세, 국세청 과세 정보 송수신 일지(로그) 등의 정보

정보주체는 국세청 과세 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이용이 제한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는 신청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정보를 수집 및 홈페이지내 공개를 합니다. 수집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정보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확인 여부 등의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수집하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번호,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정보 등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전체동의

확인

약관 '전체동의' 후 '확인' 클릭

**Q** : 전체동의 후  
확인 클릭 시  
'나의정보에서 기  
업정보를 입력하  
세요.  
나의정보를 수정  
하시겠습니까?'  
라고 팝업이 보  
입니다.

**A** : [나의 정보]에  
서 기업정보 입  
력 후 재접속 바  
랍니다.

## 신청서 작성

\*[온라인자료제출]이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확인서발급신청]-[제출자료 조회]에서 제출자료완료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신청서를 작성  
 (직전, 당해연도 창업기업, 3개년 간편장부기업, 분할, 합병, 관계기업보유 기업 제외)  
 \* 물음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력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

|                      |  |            |                |
|----------------------|--|------------|----------------|
| 기업명 *                | 함내세요중소기업   | 1          | 홍길동            |
| 기업유형 *               | 법인기업   | 본점사업자등록일   | 2005-02-05     |
| 본점 사업자번호 *           | 000-86-00000   | 법인등록번호 *   | 000000-0000000 |
| 본점 사업장주소 *           | 07233  | 우편번호       |                |
| 최근사업기간말일 *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 함내세요중소기업   |                |
| 확인서 지정정보표기여부 *       |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부 | 지점 사업자번호 * |                |
| 지점사업장주소 *            |  | 우편번호       |                |
| 확인서용도 *              | 3 그이외  |            |                |
| 외감기업 여부 *            |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부 |            |                |
| 직전 또는 당해 사업연도 합병분할여부 | 선택안함   |            |                |
| 주업종 *                | 4 J-정보통신업  |            |                |
| 2021년 발생매출액 큰 업종 *   | 5 J-정보통신업  |            |                |

(직전년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 창업기업 및 업종이 1개인 경우 위의 업종과 동일하게 선택.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상세페이지 참조

주의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합병 또는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직전 또는 당해 사업연도 합병분할 여부'에서 유형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공공입찰용' 또는 '공공입찰용+그외'를 선택하시면 대기업 지분현황에 따라 확인서 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 해당 여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하지 않도록 함

필수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해당 여부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 여부

간편장부대상기업

\* 최근 3개년 연속으로 간편장부대상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 최근 3개년 이내 복식부기대상이 된 적이 있는 기업은 해당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 근로소득 간이세액신고 인원 없이 일용직만 신고한 근로자 1인기업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상 최저액 미달 등으로 원천징수 신고서 미제출 신고하지 않은 기업들이 해당

6 저장

1. 본점사업자등록일 :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일"

2. 최근사업기간말일 :  
 12월 결산 2021-12-31  
 6월 결산 2022-06-30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 중 '순익계산서'에 표시된 사업기간의 마지막 날짜

3. 확인서 용도:  
 공공입찰용/공공입찰용 + 그 외/그 이외 중 선택

4. 주업종 :  
 세무대리인 있다면 → 신청 기업의 '업종 대분류' 문의

세무대리인 없다면 → 통계분류포털-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 대분류' 검색

5. 2021년 발생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 :  
 - 전년도 발생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 선택

6. 저장 후 다음 페이지 이동

※ 파란색 네모칸은 지점이 있거나 외감기업, 합병분할에 해당하는 기업들만 입력할 것.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ALL BUSINESS STATUS INFORMATION SYSTEM

중소기업확인



홈 > 중소기업확인 > 신청서작성하기

중소기업확인

중소기업 범위 +

확인서발급절차안내

온라인자료제출하기

제출서류조회하기

신청서 작성하기

진행상황보기

확인서 출력/수정

중소기업 여부 조회 +

중소기업여부 알아보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여부

주식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기업이 최다출자자이면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됨

 해당되지 않음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기업의 주식소유여부판단기준(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호 나목)

- 자산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비영리 법인은 제외)
- 최다출자자: 해당 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
  - 주식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 주식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 외국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함

적용 제외되는 법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그밖에 '1~4'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이전

다음

해당 여부 확인 후 '다음' 버튼  
클릭하여 이동

신청기업의 주주현황 입력

**\* 주주가 모두 사람인 경우**

직전연도정보 불러오기

입력안내서 다운로드

\* 직전연도말 신청기업의 '주주명부'를 참고하여 입력  
[입력안내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입력 방법 참고

기준일자: 2021-12-31

| 선                        | 구분 | 기업명/이름 | 법인번호/생년월일 | 주식비율   | 외감대상여부 | 특수관계자 |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여부 | 법인기업의 주주정보 |
|--------------------------|----|--------|-----------|--------|--------|-------|---------------|------------|
| <input type="checkbox"/> | 개인 | 홍길동    | 660101    | 60     | 해당없음   | 특수관계자 | 5000억이하       |            |
| <input type="checkbox"/> | 개인 | 유재석    | 740107    | 40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5000억이하       |            |
| 주식비율합계                   |    |        |           | 100.00 | %      |       |               |            |

- 주1) 신청기업의 주주가 사람일 경우 [행추가] 하여 [구분]에 [개인]으로 선택
- 주2) 신청기업의 주주가 다른 국내법인일 경우 [행추가]하여 [구분]에 [국내법인]으로 선택
- 주3) 신청기업의 주주중 국내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기업의 주주정보]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주주인 국내법인의 주주정보도 100% 입력해야 함
- 주4) 신청기업의 주식을 외국법인이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서 작성 완료 이후 주주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후 진행(30%이상 최대출자자인 경우 포함)
- 주5) 주식비율(%)은 소수점 2자리까지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35.16%)
- 주6) 주주입력은 최대 20개 까지 가능, 1%이하 소액주주, 자사주, 외국인,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는 [행추가]하여 [구분]에 [기타]으로 선택하여 주식비율만 입력
- 주7) 약결권 없는 주식 등은 제외하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주8) 생년월일이 동일한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은 [구분]에 [기타]로 입력하여 주식비율만 기재

1 **+ 행추가**    - 행사제    3 **저장**

입력시 참고사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2호 다목, 제3조제2에 따라 신청기업과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속하는 기업의 주식등 소유비율을 모두 표시 합니다.

주주인 **국내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외부감사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외감대상]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개인, 그 개인의 친족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하여야 합니다.

주주중 '외국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직전연도 자산총액을 정확히 선택하여야 합니다.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5000억 이하, 이상을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기업의 주주인 외국법인의 지배(모기업)기업등 최대출자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최대출자자 및 주주정보를 100%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최근 사업기간일 표시 됩니다.(당해 창업기업, 합병, 분할기업은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기준으로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업의 최대출자자가 아니라도 지배기업(모기업)이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 코스닥)으로서 신청기업등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및 자회사와 합산하여 신청기업의 주식을 우회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주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후 신청서 작성 등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다음**

1. 주주 인원수에 맞게 '행 추가' 클릭
2. 구분에 '개인'으로 선택, 주주 각각의 이름, 생년월일, 주식비율, 특수관계자 여부 선택
3. 저장
4. 다음 페이지 이동

\* 주식비율 합계가 100% 맞는지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신청기업의 주주현황 입력

**\* 주주 중에 국내법인이 있는 경우**

직전연도정보 불러오기

📄 입력안내서 다운로드

\* 직전연도말 신청기업의 '주주명부'를 참고하여 입력  
[입력안내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입력방법 참고

기준일자: 2021-12-31

| 선택                       | 구분   | 기업명/이름 | 법인번호/생년월일  | 주식비율 | 외감대상여부 | 특수관계자 | 직전연도말 자산총액여부 | 법인주주정보 |
|--------------------------|------|--------|------------|------|--------|-------|--------------|--------|
| <input type="checkbox"/> | 국내법인 | 한국평가대  | 110111-000 | 70   | 외감대상   | 해당없음  | 5000억미만      | 등록     |
| <input type="checkbox"/> | 개인   | 홍길동    | 660101     | 30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5000억미만      |        |

주식비율합계 100.00

1. 주주 수에 맞게 행 추가

2. 주주가 국내 타 법인이면 구분에 '국내법인'으로 선택, 기업명, 법인번호, 주식비율, 외감대상여부 선택

3. 저장

4. 등록 클릭

5. 기업주주의 주주현황도 100% 입력

6. 저장

7. 닫기

8. 다음 페이지 이동

- 주1) 신청기업의 주주가 사람일 경우 [행추가] 하여 [구분]에 [개인]으로 선택
- 주2) 신청기업의 주주가 다른 국내법인일 경우 [행추가]하여 [구분]에 [국내법인]으로 선택
- 주3) 신청기업의 주주중 국내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기업의 주주정보]-[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주주인 국내법인의 주주정보도 100% 입력해야 함
- 주4) 신청기업의 주식을 외국법인이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서 작성 완료 이후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후 진행(30%이상 최대출자자인 경우 포함)
- 주5) 주식비율(%)은 소수점 2자리까지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35.16%)
- 주6) 주주입력은 최대 20개 까지 가능, 1%이하 소액주주, 자사주, 외국인,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는 [행추가] 하여 [구분]에 [기타]로 선택하여 주식비율만 입력
- 주7) 의결권 없는 주식 등은 제외하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주8) 생년월일이 동일한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은 [구분]에 [기타]로 입력하여 주식비율만 기재

1. + 행추가    3. 저장

7. 닫기

5. (Table with 4 rows of shareholder info)

6. 저장

'등록' 클릭 시 나오는 화면에는 주주기업인 한국평가대 이터(주)의 주주현황도 100% 가 되도록 입력.

※ 신청기업의 정보를 똑같이 한번 더 입력 하는 것이 아님.

신청기업의 주주현황 입력

**\* 주주 중에 외국법인이 있는 경우**

직전연도정보 불러오기

↓ 입력안내서 다운로드

\* 직전연도말 신청기업의 '주주명부'를 참고하여 입력  
[입력안내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입력 방법 참고

기준일자: 2021-12-31

| 선택                       | 2 구분 | 기업명/이름 | 법인번호/생년월일 | 주식비율   | 외감대상여부 | 특수관계자 |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여부 | 법인기업의 주주정보 |
|--------------------------|------|--------|-----------|--------|--------|-------|---------------|------------|
| <input type="checkbox"/> | 외국법인 | ABC    |           | 80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5000억미만       | 등록         |
| <input type="checkbox"/> | 기타   |        |           | 20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5000억미만       |            |
| 주식비율합계                   |      |        |           | 100.00 |        |       |               |            |

- 주1) 신청기업의 주주가 사람일 경우 [행추가] 하여 [구분]에 [개인]으로 선택
- 주2) 신청기업의 주주가 다른 국내법인일 경우 [행추가]하여 [구분]에 [국내법인]으로 선택
- 주3) 신청기업의 주주중 국내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기업의 주주정보]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주주인 국내법인의 주주정보도 100% 입력해야 함
- 주4) 신청기업의 주식을 외국법인이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서 작성완료 이후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후 진행(30%이상 최대출자자인 경우 포함)
- 주5) 주식비율(%)은 소수점 2자리까지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35.16%)
- 주6) 주주입력은 최대 20개 까지 가능, 1%이하 소액주주, 자사주, 외국인,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는 [행추가] 하여 [구분]에 [기타]으로 선택하여 주식비율만 입력
- 주7) 의결권 없는 주식 등은 제외하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주8) 생년월일이 동일한 경우 특수관계 1 인 개인은 [구분]에 [기타]로 입력하 3 비율만 기재

+ 행추가    - 행사제    저장

입력시 참고사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2호 다목, 제3조의2에 따라 신청기업과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속하는 기업의 주식등 소유비율을 모두 표시합니다.

주주인 국내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외부감사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외감대상]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개인, 그 개인의 친족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하셔야 합니다.

주주중 '외국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직전년도 자산총액을 정확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5000억 이하, 이상을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기업의 주주인 외국법인의 지배(모기업)기업등 최대출자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최대출자자 및 주주정보를 100%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최근 사업기간일 표시 됩니다.(당해 창업기업, 합병, 분할기업은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기준으로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업의 최대출자자가 아니더라도 지배기업(모기업)이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 코스닥)으로서 신청기업등과 연결제우체표를 작성하는 경우 및 자회사와 합산하여 신청기업의 주식을 우회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후 신청서 작성 등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4    다음

1. 주주 수에 맞게 행 추가

2. 주주가 외국법인이면 구분에 '외국법인'으로 선택, 기업명, 주식비율,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여부 선택

3. 저장

4. 다음 페이지 이동

※ 외국법인의 지분율이 100%인 경우는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한 이후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 신청기업의 주주현황 입력

**\* 기타**

직전연도정보 불러오기

↓ 입력안내서 다운로드

\* 직전연도말 신청기업의 '주주명부'를 참고하여 입력  
[입력안내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입력방법 참고

기준일자: 2021-12-31

| 선택                       | 구분  | 기업명/이름 | 법인번호/생년월일 | 주식비율   | 외감대상여부 | 특수관계자 |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여부 | 법인기업의 주주정보 |
|--------------------------|-----|--------|-----------|--------|--------|-------|---------------|------------|
| <input type="checkbox"/> | 국법인 | ABC    |           | 80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5000억미만       | 등록         |
| <input type="checkbox"/> | 기타  |        |           | 20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5000억미만       |            |
| 주식비율합계                   |     |        |           | 100.00 | %      |       |               |            |

1. 주주 수에 맞게 행 추가

2. 1% 이하 소액주주, 자사주,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투자(신탁)조합, 개인주주의 생년월일이 동일한 경우  
→ 구분에 '기타' 선택 하여 주식비율만 입력

- 주1) 신청기업의 주주가 사람일 경우 [행추가] 하여 [구분]에 [개인]으로 선택
- 주2) 신청기업의 주주가 다른 국내법인일 경우 [행추가]하여 [구분]에 [국내법인]으로 선택
- 주3) 신청기업의 주주중 국내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기업의 주주정보]-[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주주인 국내법인의 주주정보도 100% 입력해야 함
- 주4) 신청기업의 주식을 외국법인이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서 작성 완료 이후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후 진행(30%이상 최대출자자인 경우 포함)
- 주5) 주식비율(%)은 소수점 2자리까지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35.16%)
- 주6) 주주입력은 최대 20개 까지 가능, 1%이하 소액주주, 자사주, 외국인,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는 [행추가]하여 [구분]에 [기타]으로 선택하여 주식비율만 입력
- 주7) 의결권 없는 주식 등은 제외하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주8) 생년월일이 동일한 경우 특수관계자 1 개인은 [구분]에 [기타]로 입력하여 3 비율만 기재

3. 저장

4. 다음 페이지 이동

### 입력시 참고사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2호 다목, 제3조의2에 따라 신청기업과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속하는 기업의 주식등 소유비율을 모두 표시합니다.

주주인 **국내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외부감사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외감대상]**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개인**, 그 개인의 친족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하여야 합니다.

주주중 '**외국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직전년도 자산총액을 정확히 선택하여야 합니다.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5000억 이하, 이상을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기업의 주주인 **외국법인의 지배(모기업)기업등 최대출자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최대출자자 및 주주정보를 100%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최근 사업기간일 표시 됩니다. (당해 창업기업, 합병, 분할기업은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기준으로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업의 최대출자자가 아니더라도 **지배기업(모기업)이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 코스닥)으로서 신청기업등과 연결제우체표를 작성하는 경우 및 자회사와 합산하여 신청기업의 주식을 우회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후 신청서 작성 등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업이 출자한 회사정보 입력

[직전연도정보 불러오기](#)
[↓ 입력안내서 다운로드](#)

기준일자: 2021-12-31

| 선택            | 기업명/이름 | 법인등록번호 | 주식비율(%) | 외감대상여부 | 특수관계자 | 주주정보입력 | 출자정보입력 |
|---------------|--------|--------|---------|--------|-------|--------|--------|
| 조회된 내용이 없습니다. |        |        |         |        |       |        |        |

주1) 신청기업이 출자한 국내법인이 있는 경우에만 입력할 것.

주2) 출자한 기업이 외국법인일 경우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 행추가](#)
[- 행사제](#)
[저장](#)

### ✍ 입력시 참고사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2호 다목, 제3조의2에 따라 신청기업과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속하는 기업의 주식등 소유비율을 모두 표시 합니다.

주주인 **국내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외부감사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외감대상]**으로 반드시 선택하시 기 바랍니다.

기준일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최근 사업기간일 표시 됩니다. (당해 창업기업, 합병, 분할기업은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로 표기)

신청기업등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및 자회사와 합산하여 출자 주식을 우회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후 신청서 작성 등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다음](#)

출자회사가 없는 경우,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다음** 페이지 이동

## 신청기업이 출자한 회사정보 입력

직전연도정보 불러오기

📄 입력안내서 다운로드

기준일자: 2021-12-31

| 선택                       | 2       | 기업명/이름        | 법인등록번호 | 주식비율(%) | 외감대상여부 | 특수관계자 | 4  | 주주정보입력 | 출자정보입력 |
|--------------------------|---------|---------------|--------|---------|--------|-------|----|--------|--------|
| <input type="checkbox"/> | (주)대한민국 | 111111-000001 | 64     | 외감대상    | 해당없음   | 등록    | 등록 |        |        |
| 주식비율합계                   |         |               | 64.00  |         |        |       |    |        |        |

주1) 신청기업이 출자한 국내법인인 경우는에만 입력할 것.  
주2) 출자한 기업이 외국법인일 경우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 행추가   - 행사제   3   저장

### 입력시 참고사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2호 다목, 제3조의2에 따라 신청기업과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속하는 기업의 주식등 소유비율을 모두 표시 합니다.

주주인 **국내법인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외부감사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외감대상]**으로 반드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최근 사업기간일 표시 됩니다. (당해 창업기업, 합병, 분할기업은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로 표기)

신청기업등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및 자회사와 합산하여 출자 주식을 우회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주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후 신청서 작성 등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다음

7

## 주주정보 입력

닫기

직전연도정보 불러오기

기준일자: 2021-12-31

| 5                        | 선택   | 구분     | 기업명/이름        | 법인번호/생년월일 | 주식비율(%) | 외감대상여부 | 특수관계자 | 직전연도말 자산총액여부 |
|--------------------------|------|--------|---------------|-----------|---------|--------|-------|--------------|
| <input type="checkbox"/> | 기타   |        |               |           | 60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5000억이하      |
| <input type="checkbox"/> | 국내법인 | 주식회사한국 | 110111-111111 | 10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5000억이하      |
| <input type="checkbox"/> | 개인   | 홍길동    | 831015        | 30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5000억이하      |
| 주식비율합계                   |      |        |               | 100.00    |         |        |       |              |

+ 행추가   - 행사제   6   8   저장

이전   다음

- 출자회사 수에 맞게 행 추가
- 출자하는 회사의 기업명, 법인번호, 주식비율, 외감대상여부 선택 (외국기업 출자는 작성하지 말 것.)
- 저장
- 등록 클릭
- 출자회사의 주주현황과 출자정보 입력
- 저장
- 닫기
- 다음 페이지 이동

'등록' 클릭 시 나오는 화면에는 출자기업인 (주)대한민국의 주주현황을 입력.  
※ 신청기업의 정보를 똑같이 한번 더 입력 하는 것이 아님.

신청서 작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해당여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부터 「상법」 제530조의2 및 제530조의12에 따른 분할·분할합병 및 물적분할(이하 이 조에서 "분할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대기업(분할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 중 어느 하나가 분할일·분할합병일 또는 물적분할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 이내에 대기업이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같은 종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가?

해당하지 않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해당여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개인  
가족에 해당하는 개인인 친족

해당하지 않음

---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이 호에서 "대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최대주주 또는 최대지분소유자나 그 대기업의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그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거래의 주된 부분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하지 않음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관계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다른 주요 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명 등 해당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명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 드는 공장설립비(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말한다),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 용도가 [공공입찰용]으로 발급받는 경우 나오는 페이지.

[그 이외]인 경우는 나오지 않음.

1. 위 항목들의 해당 여부 확인하여 체크 후 "예" 클릭
2. 제출자, 대표자 이름 입력
3. 저장 클릭

(공공구매 종합정보-당일반영 조달청(나라장터)-익일 반영)

4. 다음 페이지 이동.

※ 법령 해석은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추후 신청 당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영 제9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로 판명될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참여자격 취소 또는 징지 및 1년이하의 참여자격 취득제한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5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 확인서"의 유의사항 및 각 항목의 해당여부를 잘 확인하셨습니다?  
 예  아니요

작성일자 2022-02-26    제출자 홍길동    대표자 홍길동

이전    **저장**    다음

저장하였습니다. 화면 아래쪽의 다음을 선택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입찰용으로 발급된 확인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당일), 나라장터(익일)반영됩니다.**

확인



### 상시근로자 현황

📅 기준일자: 2021-01-01 ~ 2021-12-31

#### 📝 본점 상시근로자

(단위:명)

| 1 | 구분               | 01월 | 02월 | 03월 | 04월 | 05월 | 06월 | 07월 | 08월 | 0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계 | 연평균 |
|---|------------------|-----|-----|-----|-----|-----|-----|-----|-----|-----|-----|-----|-----|----|-----|
|   | 원천징수이행<br>상황신고인원 |     |     |     |     |     |     |     |     |     |     |     |     | 0  | 0   |
| 2 | 연구전담요원           |     |     |     |     |     |     |     |     |     |     |     |     | 0  | 0   |
|   | 차감대상<br>임원       |     |     |     |     |     |     |     |     |     |     |     |     | 0  | 0   |
| 3 | 월소계              |     |     |     |     |     |     |     |     |     |     |     |     | 0  | 0   |

본점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인원은 온라인으로 제출하신 원천세 전자신고파일이 자동반영 되므로 수기로 입력되지 않습니다.

4 상시근로자 판단을 위해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인원이 '1월-12월' 모두 반영(입력)된 경우 다음단계로 이동 바랍니다.

#### 📝 지점 상시근로자 (반드시 지점이 있을 경우에만 입력 바랍니다.)

(단위:명)

| 구분               | 01월 | 02월 | 03월 | 04월 | 05월 | 06월 | 07월 | 08월 | 0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계 | 연평균 |
|------------------|-----|-----|-----|-----|-----|-----|-----|-----|-----|-----|-----|-----|----|-----|
| 원천징수이행<br>상황신고인원 |     |     |     |     |     |     |     |     |     |     |     |     | 0  | 0   |
| 차감대상<br>임원       |     |     |     |     |     |     |     |     |     |     |     |     | 0  | 0   |
| 월소계              |     |     |     |     |     |     |     |     |     |     |     |     | 0  | 0   |

상시근로자수는 중소기업 판단에 중요한 항목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인원의 합보다 차감대상(임원, 연구전담요원)의 합이 커, 연평균이 '0' 될 경우 임원의 수를 조정하여 최소 '0' 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해야 할 경우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바랍니다.)

3개월 이내 근로자 또는 단기간근로자가 있어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에서 차감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는 국세청에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인원의 간이세액 신고인원에서 '연구전담요원'과 '임원'을 차감하여 판단합니다.

임원: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인원 중 아래에 해당 하는 자 (중도퇴사한 임원제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등기된 이사(사외이사 감사제외) \*그 외의 기업은 무한책임사원 또는 임무 집행자 ('임원'란은 '전체 직원 수'를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 인원을 그대로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구전담인원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신청기업이 신고한 인원이 자동 반영됩니다.

원천세 반기 신고대상자의 경우, 월별 실제 상시근로자수와 반기 신고 근로자수의 차이로 인해 기업구분이 달라지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기업의 경우 지점에서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를 신고할 경우 신청기업이 직접 수기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반드시 수기로 입력)

5 6

이전 저장 다음

1. '해당 원천세 전자신고파일' 제출 완료되면 자동으로 반영되는 인원 (해당 칸에 인원이 안 떠 있다면 해당 월의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것임.)

2. 연구전담 : koita(한국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제공받은 데이터 자동 반영 되므로 입력 안됨

임원: 법인인 경우 등기된 사내이사(사외, 감사 제외) 입력. 없으면 '0' 입력

\* '임원'란에 상시근로자 수 그대로 입력하지 말 것!

3. 월 소계가 마이너스 값이 뜨면 안됨

4. 지점이 있을 경우 지점 상시근로자 수 입력. (지점이 없을 경우 입력 안함.)

5, 6. 입력이 끝났으면 '저장', '다음' 클릭

## 신청자정보

1

|          |                            |          |                   |
|----------|----------------------------|----------|-------------------|
| 신청자성명 *  | 홍길동                        | 휴대전화번호 * | 010 - 0000 - 0000 |
| 회사전화번호 * | 02 - 0000 - 0000           | 회사팩스번호   | 02 - 0000 - 0000  |
| 이메일 *    | cheerup2022 @ kedkorea.com | 직접입력     |                   |

자료제출  
방법선택 \*

자료제출 프로그램 이용 직접제출(당일 제출)

\*자료제출 방법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온라인자료제출]에서 자료제출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과세자료 제출'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 재무 및 원천세 자료를 국세청을 통해 반영하게 됨으로 자료 반영에 1영업일 이상 소요됩니다.
- 국세청 과세자료 제출 시 미 수신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프로그램을 통해 부족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빠른 발급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에는 '자료제출 프로그램 이용 직접 제출'을 선택하시고,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온라인자료제출]메뉴에서 '자료제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필요한 자료를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이전

저장

##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의한 확인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거나 지배·종속기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서류를 누락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발생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으며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산출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 사책에 참여한 경우 기지원 받은 사항은 무효 또는 취소 및 회수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3

신청서 제출

### 1. 신청자 정보 입력

\* 신청자 성명에 2명 이상의 사람을 입력하거나 이메일에 마침표(.) 혹은 특수문자를 입력할 경우 오류 발생하므로 입력 시 유의할 것

### 2. 저장

### 3. 신청서 제출 클릭



홈 로그인 내의정보 사이트맵 중소기업24 통합로그인

- 중소기업현황
- 중소기업 범위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고객센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범위 확인 >



중소기업현황시스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로그아웃

회원정보수정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는 자료제출 -> 신청서 작성 - 제출 순입니다. 반드시 STEP01 - STEP05 순서로 클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진행 상황 확인' 클릭

| 공지사항                                       | 자주하는 질문                            |
|--|------------------------------------|
| ☆☆☆ 서비스 점검 안내 2022.02.26일 (토) am 7시 ~ 2... | 기존 담당자가 퇴사 했구요. 사용하던 아이디는 비밀번...   |
| ☆☆☆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 안내 2021.11.16(화) 19...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 ...   |
| ★★ 서비스 점검 안내 2021.10.29(금) pm 20시 ~ 202... | 나라장터에 중소기업 공공임차 참여 하려고 하는 기업입...   |
| ★★★★2021년 중소기업확인서_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사이트에서 중소기업확인...    |
| 202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 |
| 2021년 중소기업확인서_ [전자신고파일 제작 이용 매뉴...         | 유효기간은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
| ★★ 긴급공지 ★★ 1357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유효기간이 지난 과거 확인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오후 12:00 ~ 13:00

중소기업범위 해설서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문의**

- 일반상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 02-3215-2674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서 작성 및 법령문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번호 및 주소 안내 ➡

**관련 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장터 1번가](#)
- 중소벤처기업부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공정거래는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사업 이것이 궁금해요 [#알려줘\\_증기씨](#)
-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기업데이터 [KEDI](#)
- 중소기업 상용 상담이 [기업마당](#)
- WORKNET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발급절차 안내
- 온라인 자료제출
- 제출자료 조회
- 신청서 작성
- 진행상황 확인**
- 확인서 출력/수정
- 발급안내 문의처

진행상황 확인

**자료 제출이 완료 된 기업일 경우**

진행상황 조회

1. 진행상황이 [자료제출 확인요청] 및 [자료미제출]인 기업은 [결과보기]-[오류]확인을 통해 누락된 자료를 다시 제출 하신 뒤 신청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2. 일반기업이 [관계기업, 직전, 당해연도 분할, 합병 자료제출]을 통해 자료를 제출 할 경우 자료접수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기간조회

진행상황 결과

2

| 발급일자       | 진행상황 | 상세내용                | 중기확인결과 | 결과보기                     | 비고 |
|------------|------|---------------------|--------|--------------------------|----|
| 2022.02.26 | 완료   | 중소기업여부 판단이 완료되었습니다. | 소상공인   | <a href="#">확인서 발급완료</a> |    |

관계기업· 직전, 당해연도 분할, 합병 자료제출

관계기업, 직전, 당해 합병, 분할기업이 아닌 경우 자료제출 불가

※ 서울소재 기업은 '관계기업 오류' 및 '합병·분할기업 오류' 인 경우 관련자료를 우편 접수 부탁드립니다.

※ [관계기업· 직전, 당해연도 분할, 합병 자료제출] 을 통해 관련자료를 제출한 기업의 경우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자료제출확인 여부 및 진행상황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진행상황이 '관계기업 오류' 및 '합병, 분할 기업 오류' 인 경우 처리절차 아래 [오프라인 증빙자료 제출안내]를 클릭하여, 관련 자료를 주소지 관할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제출

**오프라인 증빙자료 제출안내**

- \* 관계기업, 직전년, 당해연도 분할, 합병 자료제출을 통해 제출
2. 진행상황이 부적합인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3. 진행상황이 담당자 접수일 경우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담당자가 확인중인 것임
4. 진행상황이 '판단불가'인 경우 처리절차 '비고'란에 있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판단불가건을 삭제처리하신 후 다시 신청서를 재작성하여 제출 (상시근로자가 연평교\*, 최근사업기간말일, 출자기업정보 오기제로 인한 판단불가로 나온 경우는 반드시 오기제한 정보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확인서 발급됨)
5. 진행상황이 외국법인 오류인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안내**

1. 기간을 설정하여 검색 클릭
2. 진행결과 확인
  - 진행상황에 '완료'라고 뜰 경우 자료가 정상 제출된 것임.
  - '자료제출 확인요청'으로 뜰 경우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므로 '제출자료 조회하기'에서 미비된 자료 확인하여 추가 제출.
  - "판단불가" 삭제 후 신청서 다시 제출

## 합병,분할 기업 / 외국법인 / 관계기업 보유 기업일 경우

### 진행상황조회

1. 진행상황이 [자료제출 확인요청] 및 [자료미제출]인 기업은 [결과보기]-[오류]확인을 통해 누락된 자료를 다시 제출 하신 뒤 신청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2. 일반기업이 [관계기업, 직전,당해연도 분할,합병 자료제출]를 통해 자료를 제출 할 경우 자료접수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기간조회

### 진행상황 결과

2

| 발급일자 | 진행상황         | 상세내용                                    | 중기확인결과 | 결과보기 | 비고 |
|------|--------------|---|--------|------|----|
|      | 외국법인 오류      | 외국법인이 30%이상 출자중인 경우, 관할 중소기업청으로 문의바랍니다. |        |      |    |
|      | 합병분할 오류      |   |        |      |    |
|      | 관계기업 제출자료 오류 | 관계기업 · 직전, 당해연도 분할, 합병 자료제출             |        |      |    |

관계기업, 직전,당해 합병,분할기업이 아닌 경우 자료제출 불가

※ 서울 소재 기업은 '관계기업 오류' 및 '합병·분할기업 오류'인 경우 관련자료를 우편 접수 부탁드립니다.

※ [관계기업 · 직전,당해연도 분할,합병 자료제출]을 통해 관련자료를 제출한 기업의 경우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자료제출확인 여부 및 진행상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진행상황이 '관계기업 오류' 및 '합병, 분할 기업 오류'인 경우 처리 절차  
아래 [오프라인 증빙자료 제출안내]를 클릭하여, 관련 자료를 주소지 관할 지방 중소기업청으로 우편제출

#### 오프라인 증빙자료 제출안내

- \* 관계기업, 직전년, 당해연도 분할, 합병 자료제출을 통해 제출
- 2. 진행상황이 부적합인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 중소기업청으로 문의
- 3. 진행상황이 담당자 접수일 경우 지방 중소기업청 담당자가 확인중인 것임
- 4. 진행상황이 '판단불가'인 경우 처리절차  
'비고'란에 있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판단불가건을 삭제처리하신 후 다시 신청서를 재작성하여 제출 (상시근로자가 연평균 -, 최근사업기간말일, 출자기업정보 오기제로 인한 판단불가로 나온 경우는 반드시 오 기재한 정보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확인서 발급됨)
- 5. 진행상황이 외국법인 오류인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 중소기업청으로 문의

#### 지방 중소기업청 안내

1. 기간을 설정하여 검색 클릭

2. 진행결과 확인

- 관계기업 오류, 합병분할 기업, 외국법인오류 등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 페이지 하단의 오프라인 증빙자료 제출안내 참고하여 지방 중소기업청으로 우편발송.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진행상황 확인

※ '소상공인유예검토' 대상 기업만 진행

㉠ 과거자료제출 가능 기업

제출 하신 뒤 변경지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2. 일반기업이 [관계기업, 직전, 당해연도 분할, 합병 자료제출]을 통해 자료를 제출 할 경우 자료접수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절차 안내

온라인 자료제출

제출자료 조회

신청서 작성

진행상황 확인

확인서 출력/수정

발급안내 문의처

기간조회 2022.01.21 2022.02.21 검색

진행상황 결과

| 발급일자       | 진행상황     | 상세내용 | 중기확인결과 | 비고  |
|------------|----------|------|--------|---|
| 2022.02.21 | 소상공인유예검토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1단계 과거자료제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2px;">2단계 과거 규모확인 선택사항 입력</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2px;">세로그림</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2px;">오류확인</div> |

온라인 자료제출

추가 제출서류목록(소상공인유예 검토 필요 기업)

※'소상공인유예검토 필요 기업'이 아닌 경우 추가제출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대상 기업만 추가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자료제출방법   | 주요사항   | 온라인 제출 프로그램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4회년전(2018) 재무제표</li> <li>최근 4회년전(2018) 초정우수입금액명세서</li> <li>최근 2회년전(2020) 원천세 수입명세서(자원포함)</li> </ol> <p>※ 1차 온라인 자료제출 시 최근 3개월(2019, 2020, 2021년) 소정우수입금액 명세서 최근 1개월(2022) 원천세 수입명세서(자원포함)를 필수로 제출한 기업인 경우만 해당</p> <p>※ 1차 온라인 자료제출 하지 않은 기업인 경우 추가제출서류 및 1차 온라인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함</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단 메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 자료제출] 클릭</li> <li>자료제출(법인기업) 탭 → [자료제출 프로그램 자동설치(실행)] 클릭</li> <li>'자료제출 프로그램' 설치</li> <li>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li> <li>제출자료 선택 → 전송</li> </ol> <p>* PDF, 엑셀, jpg, zip 파일은 제출 불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 수령/기안 후 신고자료의 경우 자료제출 불가</li> <li>※ 원천세 수령/기안 후 신고자료의 경우 자료제출 불가</li> <li>※ 자료제출 프로그램 로그인 시 반드시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li> <li>※ 직권 또는 당해연도 향양기 임은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가능</li> <li>(원천세/관, 관계기업 보유기업, 소상공인 유예 검토 대상기업 등 제외)</li> <li>※ 소상공인 유예 검토 대상기업의 경우 과거규모 확인절차를 추가 진행해야 하며, 단계별 진행 절차에 따라 과거자료제출 및 과거규모 확인 위한 안내 항목을 꼭 살펴보아야 함</li> </ul> | <p>온라인 자료제출 메뉴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제출 메뉴 열기</li> <li>온라인 자료제출 프로그램 설치</li> <li>자료제출 프로그램 자동설치(실행)</li> <li>자료제출 프로그램 수동설치</li> <li>전자신고 파일제출 프로그램 수동설치</li> </ul> |

<중기확인 결과>

a. 소상공인 유예검토 -> 당해연도 판단결과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기업인 경우에 나오는 페이지 =>과거 재무제표 있으며, 원천세 신고한 기업의 경우 과거 자료제출 이 후 과거 규모확인 선택사항 입력하여 단계별 추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1단계 과거자료제출] 클릭**
- 추가 제출서류(과거) 확인**
  - 2018년 법인세 신고자료 (재무제표)(12월 결산법인의 경우)
  - 2020년 원천세 신고자료(12개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 자료제출 프로그램 자동설치(실행) 클릭하여 과거자료 온라인 추가 제출**
  - 온라인 자료제출 방법은 p.1~p.9 참고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진행상황 확인

※ '소상공인유예검토' 대상 기업만 진행  
㉠ 과거자료제출 가능 기업

발급절차 안내

온라인 자료제출

제출자료 조회

신청서 작성

진행상황 확인

확인서 출력/수정

발급안내 문의처

제출 하신 뒤 신청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2. 일반기업이 [관계기업, 직전.당해연도 분할.합병 자료제출]을 통해 자료를 제출 할 경우 자료접수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조회

2022.01.21

2022.02.21

검색

진행상황 결과

| 발급일자       | 진행상황     | 상세내용 | 중기확인결과 | 결과보기  | 비고 |
|------------|----------|------|--------|---|----|
| 2022.02.21 | 소상공인유예검토 |      |        | 1단계 과거자료제출<br>2단계 과거 규모확인 선택사항 입력<br>새로고침<br>오류확인 |    |

a

1

5

4

신청기업의 과거 규모확인 선택사항 입력

2022년 기준

사업자종류: 소상공인창업기업, 소상공인창업기업

직전년 또는 당해연도 분할방법: 선택사항

자산총액 (천원): 5천원 이상 ~ 5천원 미만

주주 및 출자현황: 주주명, 출자비율, 출자일

주주명: [이름] (주주명 입력 필수)

출자비율: [비율] (%)

출자일: [연월일]

상시근로자수: [숫자]

3 [저장]

4 [닫기]

<중기확인 결과>

[1단계 과거자료제출]이 끝나면 [홈]-[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진행상황 확인]으로 다시 이동

1. [2단계 과거 규모확인 선택사항 입력] 클릭

2. 2020-12-31일 결산일자 기준(12월 결산법인의 경우)

ㄱ.주업종, ㄴ.직전년 주업종 선택 후

ㄷ.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여부

ㄹ. 주주 및 출자현황 입력 순서로 각각 정보 입력

※ 초록색 네모칸은 외감 기업 이거나, 합병분할,외국법인이 30%이상 주식을 보유 하거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에 해당하는 기업들만 입력할 것.

3. [저장]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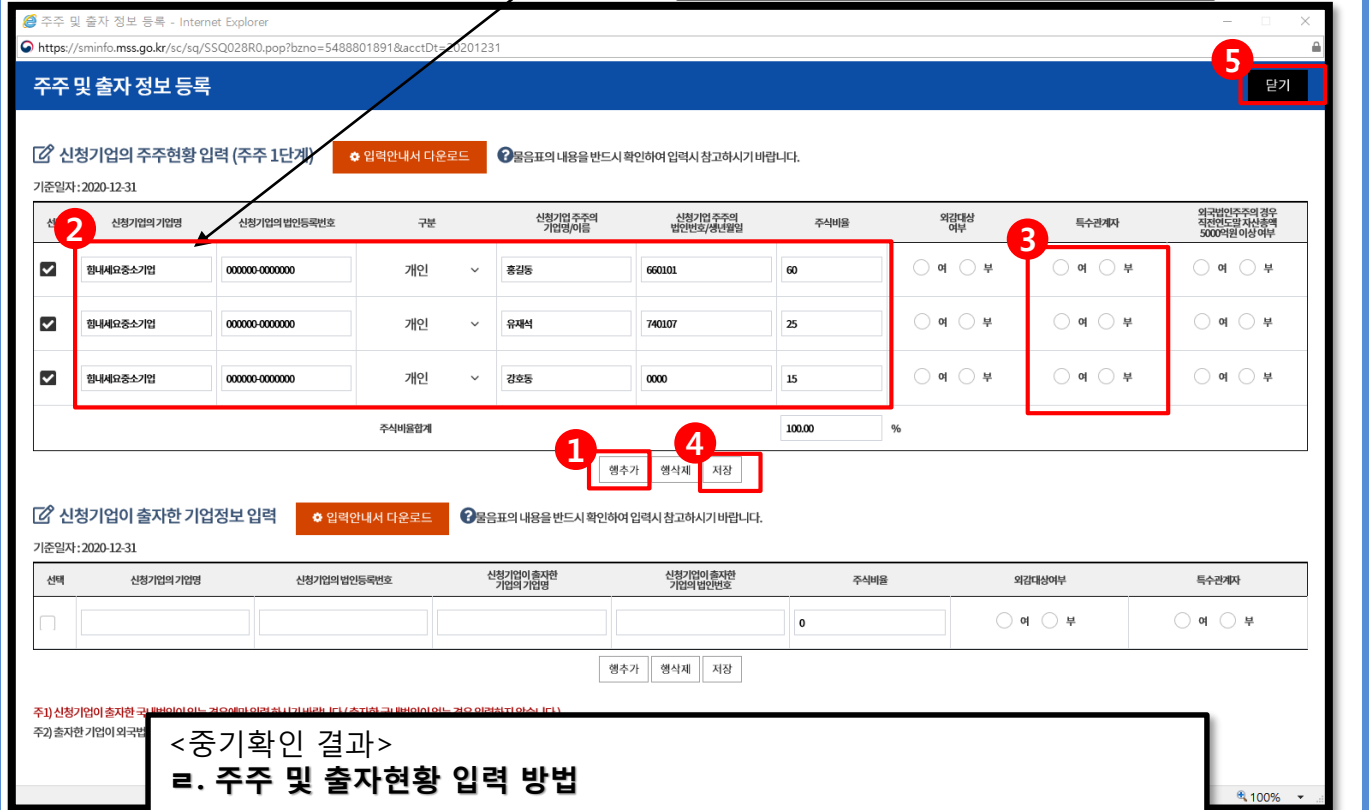
4. [닫기] 클릭

5. [새로 고침] 클릭

※ '소상공인유예검토' 대상 기업만 진행  
 ㉠ 과거자료제출 가능 기업



\* 주주가 모두 사람인 경우



<중기확인 결과>

㉠. 주주 및 출자현황 입력 방법

[주주 및 출자현황 입력]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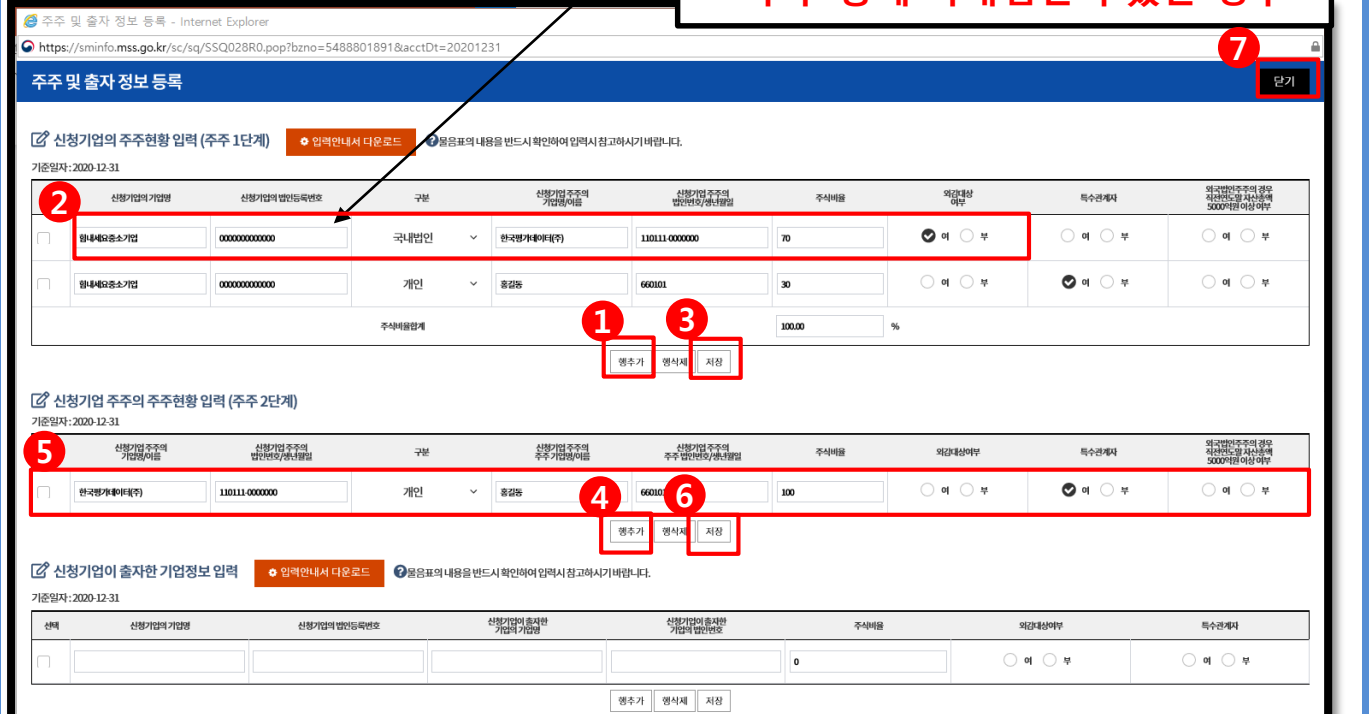
1. 주주 인원수에 맞게 '행 추가' 클릭
  2. 신청기업의 기업명 과 법인번호 입력 후 구분에 '개인'으로 선택, 주주 각각의 이름, 생년월일, 주식비율입력 함
  3. 특수관계자 여부 선택 이후 주식비율 합계가 100% 맞는지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4. [저장] 클릭
  5. [닫기] 클릭
- ※ 출자회사가 없는 경우,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음



※ '소상공인유예검토' 대상 기업만 진행
㉠ 과거자료제출 가능 기업



\* 주주 중에 국내법인이 있는 경우



<중기확인 결과>

㉠. 주주 및 출자현황 입력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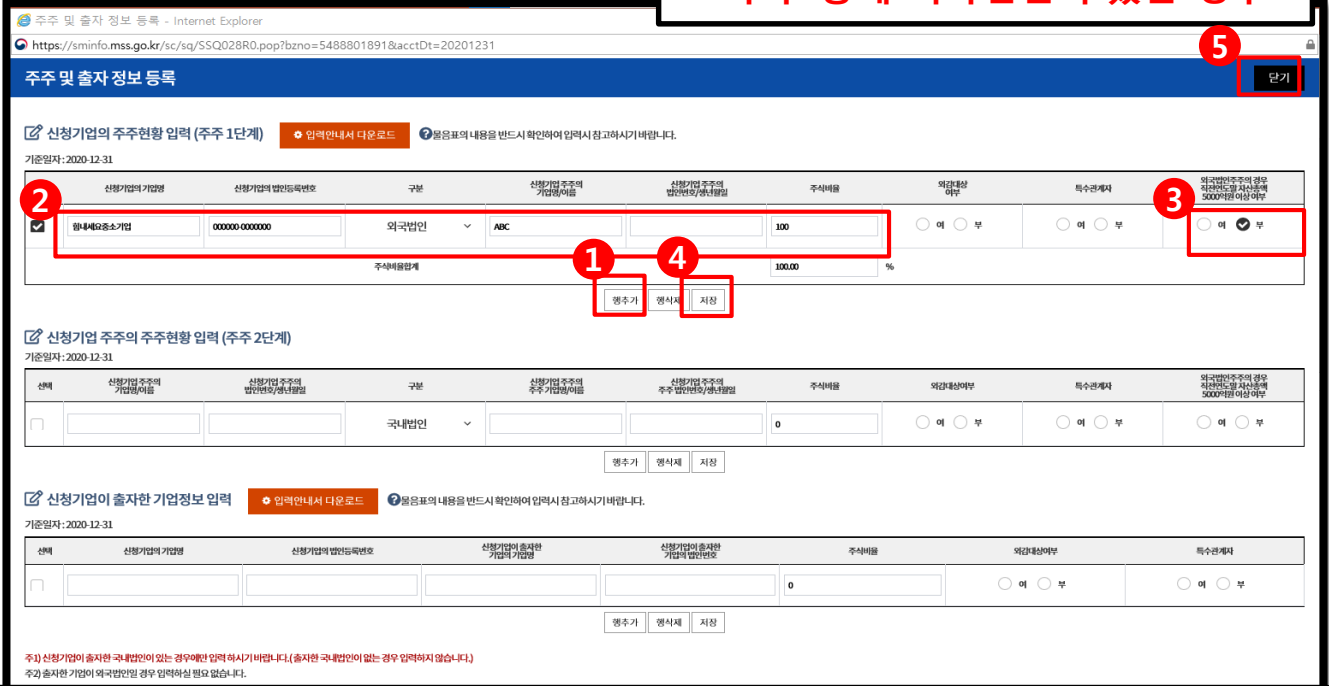
[주주 및 출자현황 입력] 클릭

- 1. 주주 인원수에 맞게 '행 추가' 클릭
2. 신청기업의 기업명 과 법인번호 입력 후 주주가 국내 타 법인이면 구분에 '국내법인'으로 선택, 기업명, 법인번호, 주식비율,외감대상여부 선택함. =>주식비율 합계가 100% 맞는지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3. [저장] 클릭
4. 신청기업 주주의 주주현황 입력 (주주2단계) 항목에 신청기업 주주의 주주 인원수에 맞게 '행 추가' 클릭
5. 신청기업 주주의 기업명과 법인번호 입력 후 신청기업 주주의 주주 기업명, 법인번호,주식비율,외감대상여부 등 주주 구분에 맞게 입력
6. [저장] 클릭
7. [닫기] 클릭
※ 출자회사가 없는 경우,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음

**※ '소상공인유예검토' 대상 기업만 진행**  
**㉠ 과거자료제출 가능 기업**



**\* 주주 중에 외국법인이 있는 경우**



- <중기확인 결과>**  
**㉠. 주주 및 출자현황 입력 방법**
- [주주 및 출자현황 입력] 클릭**
1. 주주 인원수에 맞게 '행 추가' 클릭
  2. 신청기업의 기업명 과 법인번호 입력 후 주주가 외국법인이면 구분에 '외국법인'으로 선택, 기업명,주식비율 입력함
  - ※ 외국법인의 지분율이 30%인 경우는 '여' 체크 후 [2단계 과거 규모확인 선택사항 입력] 제출한 이후 주소지 관할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3. 외국법인의 직전연도말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 여부 체크
  4. [저장] 클릭
  5. [닫기] 클릭
  - ※ 출자회사가 없는 경우,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음

**※ '소상공인유예검토' 대상 기업만 진행**  
**㉠ 과거자료제출 가능 기업**



**\* 기타 주주**



<중기확인 결과>

㉠. 주주 및 출자현황 입력 방법

[주주 및 출자현황 입력] 클릭

1. 주주 인원수에 맞게 '행 추가' 클릭
2. 신청기업의 기업명 과 법인번호 입력 후 주주가 1% 이하 소액주주, 자사주,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투자(신탁)조합, 개인 주주의 생년월일이 동일한 경우 →구분에 '기타' 선택 하여 주식비율만 입력
3. [저장] 클릭
4. [닫기] 클릭

※ 출자회사가 없는 경우,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음

**※ '소상공인유예검토' 대상 기업만 진행**  
**㉠ 과거자료제출 가능 기업**

주주 및 출자 정보 등록 - Internet Explorer  
 https://sminfo.mss.go.kr/sc/sa/SSQ028R0.pop?bzno=5488801891&acctDt=20201231

**\* 출자한 기업이 있는 경우**

신청기업이 출자한 기업정보 입력  ? 도움말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력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자: 2020-12-31

| 신청기업의 기업명 | 신청기업의 법인등록번호 | 신청기업이 출자한 기업의 기업명 | 신청기업이 출자한 기업의 법인번호 | 주식비율 | 외감대상여부   | 특수관계자   |
|-----------|--------------|-------------------|--------------------|------|--|---|
| 원내세요중소기업  | 000000000000 | (주)대한민국           | 110111-0000000000  | 100  |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부 |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부 |

주1) 신청기업이 출자한 국내법인이 있는 경우에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출자한 국내법인이 없는 경우 입력하지 않습니다.)  
 주2) 출자한 기업이 외국법인일 경우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청기업이 출자한 기업의 주주현황 입력 (출자 1단계)  
 기준일자: 2020-12-31

| 신청기업이 출자한 기업의 기업명 | 신청기업이 출자한 기업의 법인번호 | 구분   | 신청기업이 출자한 기업의 주주 기업명/이름 | 신청기업이 출자한 기업의 주주 법인번호/등록번호 | 주식비율 | 외감대상여부   | 특수관계자   | 외국법인주주의 경우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여부              |
|-------------------|--------------------|------|-------------------------|----------------------------|------|--|---|---|
| (주)대한민국           | 110111-0000000     | 국내법인 | (주)코리아                  | 110111-11111               | 50   |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부 |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부 |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부 |

신청기업이 출자한 기업이 출자한 기업현황 입력 (출자 2단계)  
 기준일자: 2020-12-31

| 신청기업이 출자한 기업이 출자한 기업의 기업명 | 신청기업이 출자한 기업이 출자한 기업의 법인번호 | 구분   | 신청기업이 출자한 기업의 기업명 | 신청기업이 출자한 기업의 법인번호 | 주식비율 | 외감대상여부   | 특수관계자   | 외국법인주주의 경우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여부              |
|---------------------------|----------------------------|------|-------------------|--------------------|------|--|---|---|
| (주)코리아                    | 110111-1111111             | 국내법인 | (주)한국             | 110111-1111122     | 34   |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부 |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부 |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부 |

<중기확인 결과>

[출자한 기업이 있는 경우 입력 방법]

1. 출자회사 수에 맞게 '행 추가' 클릭
2. 신청기업의 기업명 과 법인번호 입력 후 출자하는 회사의 기업명,법인번호,주식비율,외감대상 여부 선택 (외국기업 출자는 작성하지 말 것.)
3. [저장] 클릭
4. 출자 정보 1단계 입력 위해 신청기업이 출자한 회사의 주주현황을 '행추가' 하여 입력
5. 신청기업이 출자한 기업의 기업명 과 법인번호 입력 후 구분에 '국내법인'으로 선택, 기업명,법인번호,주식비율,외감대상여부 선택함.
6. [저장] 클릭
7. 출자한 회사가 국내 타 법인에게 출자한 내역이 있는 경우 출자 기업 수에 맞게 '행추가' 클릭
8. 신청기업이 출자한 회사가 출자한 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의 주주정보 확인하여 주주2단계 입력
9. [저장] 클릭
10. [닫기] 클릭

※ 출자회사가 없는 경우,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음

※ '소상공인유예검토' 대상 기업만 진행  
 ㉠ 과거자료제출 가능 기업

진행상황 결과

| 발급일자       | 진행상황   | 상세내용 | 중기확인 결과 | 결과보기 | 비고   |
|------------|--|------|---------|------|--|
| 2022-02-25 | 소상공인유예검토외<br>국법인 오류, 발생결<br>산월일 : 2020-12-31 |      |         |      | 1단계 과거자료제출<br>2단계 과거 규모확인<br>선택사항 입력<br>새로고침<br>오류확인 |

진행상황 결과

| 발급일자       | 진행상황                                      | 상세내용 | 중기확인 결과 | 결과보기 | 비고   |
|------------|---|------|---------|------|--|
| 2022-02-24 | 소상공인유예검토함<br>병존속, 발생결산월<br>일 : 2020-12-31 |      |         |      | 1단계 과거자료제출<br>2단계 과거 규모확인<br>선택사항 입력<br>새로고침<br>오류확인 |

진행상황 결과

| 발급일자       | 진행상황                                     | 상세내용 | 중기확인 결과 | 결과보기 | 비고   |
|------------|--|------|---------|------|--|
| 2022-02-24 | 소상공인유예검토<br>관계기업, 발생결산월<br>일: 2020-12-31 |      |         |      | 1단계 과거자료제출<br>2단계 과거 규모확인<br>선택사항 입력<br>새로고침<br>오류확인 |

<중기확인 결과>

※ '소상공인 유예검토' 기업이 [1단계 과거자료 제출] 및 [2단계 과거 규모확인 선택사항 입력] 모두 진행한 다음 [새로 고침] 눌렀을 때 시스템에서 소상공인 유예검토 판단 진행 됩니다. 다만 과거기간 관계기업이 있거나, 외국법인, 합병/분할 한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별도 검토하여 확인서 발급이 진행 됩니다.

[홈]-[고객센터]-[공지사항]의 2022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차 안내(확인서 유효기간:2022.04.01.~2023.03.31.) 안내 내용에 포함 되어 있는 유형별 자료제출 안내에 따라 추가 제출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 로그인 나의정보 사이트맵 중소기업24 통합로그인 + T -

- 중소기업현황
- 중소기업 범위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고객센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범위 확인 >



중소기업현황시스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로그아웃

회원정보수정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는 자료제출 → 신청서 작성 · 제출 순입니다. 반드시 STEP 01 ~ STEP 05 순서로 클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로드

'확인서 출력/수정' 클릭

공지사항 >

|  |            |
|--|------------|
| ☆☆☆ 서비스 점검 안내 2022.02.26일 (토) am 7시 ~ 2... | 2022-02-25 |
| ☆☆☆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 안내 2021.11.16(화) 19...     | 2021-11-02 |
| ★★ 서비스 점검 안내 2021.10.29(금) pm 20시 ~ 202... | 2021-05-04 |
| ★★★★2021년 중소기업확인서_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         | 2021-03-02 |
| 202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         | 2021-02-26 |
| 2021년 중소기업확인서_ [전자신고파일 제작 이용 매뉴...         | 2021-01-19 |
| ★★ 긴급공지 ★★ 1357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2020-09-24 |

자주하는 질문 >

|                                    |            |
|------------------------------------|------------|
| 기존 담당자가 퇴사 했구요. 사용하던 아이디는 비밀번호...  | 2022-01-06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 ...   | 2021-11-17 |
| 나라장터에 중소기업 공공임차 참여 하려고 하는 기업입...   | 2021-05-12 |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사이트에서 중소기업확인...    | 2021-05-12 |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 | 2021-07-07 |
| 유효기간은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 2022-01-21 |
| 유효기간이 지난 과거 확인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 2021-04-06 |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오후 12:00 ~ 13:00

중소기업범위 해설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문의

- 일반상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 02-3215-2674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서 작성 및 법령문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번호 및 주소 안내 ➡

관련 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장터 1번가
- 중소벤처기업부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공정거래는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사업 이것이 궁금해요 #알려줘\_증기씨
-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기업데이터 Korea Enterprise Data
- 중소기업 성공 파트너 기업마당
- WORKNET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발급절차 안내 +
- 온라인 자료제출
- 제출자료 조회
- 신청서 작성
- 진행상황 확인
- 확인서 출력/수정**
- 발급안내 문약처

확인서 출력 / 수정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및 발급용도를 수정 할 경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를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 후에 사업자등록증을 팩스(02-6974-1322)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서조회

기간조회 2021-02-26 2022-02-26 검색

조회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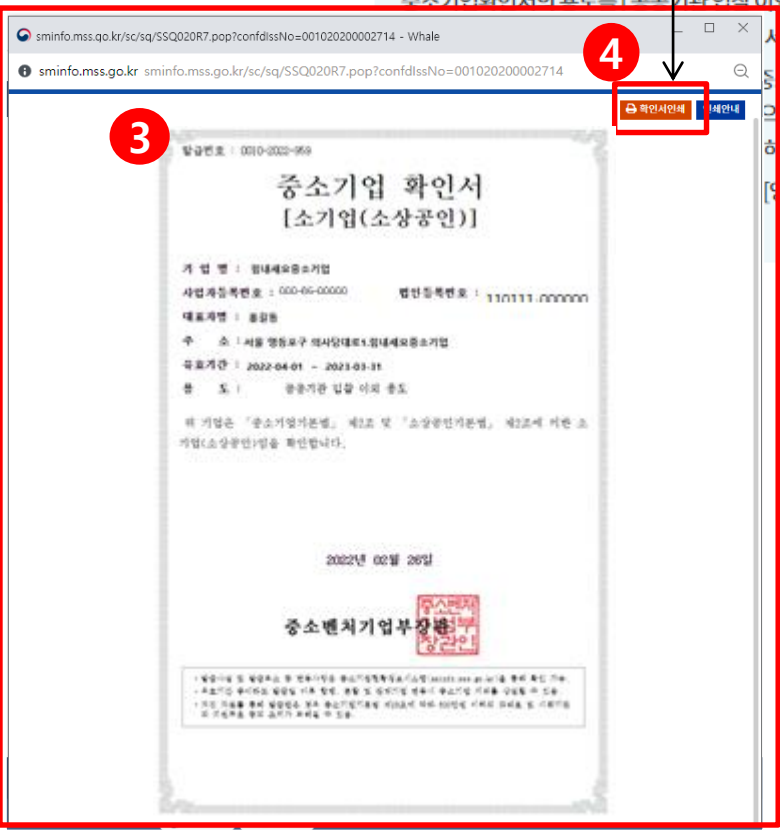
| 1                                   | 선택 | 발급일자       | 발급번호          | 유효기간                  | 확인결과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2022-02-26 | 0010-2022-959 | 2022-04-01~2023-03-31 | 소상공인 |

< 1 > >>

- 확인서 수정
- 국문확인서 출력**
- 영문확인서 출력
- 공공입찰용으로 용도변경

확인서수정

중소기업확인서의 용도를 [공공기관인척 이외의 용도]로 발급하시는 경우 나라장터(조달청) 및 공공구... 발급 정보가 연계되지 않음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된 확인서 선택
2. '국문확인서 출력' 클릭  
\*영문 확인서 사용을 원하면 확인서 수정에서 영문 정보 입력 후 '영문확인서 출력' 클릭
3. 팝업창에서 확인서 확인
4. 확인서 인쇄하여 사용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발급절차 안내
- 온라인 자료제출
- 제출자료 조회
- 신청서 작성
- 진행상황 확인
- 확인서 출력/수정**
- 발급안내 문의처

### 확인서 출력 / 수정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및 발급용도를 수정 할 경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를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 후에 사업자등록증을 팩스(02-6974-1322)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서조회

기간조회 2021-02-26 2022-02-26 검색

#### 조회결과

| 1                                   | 선택 | 발급일자       | 발급번호          | 유효기간                  | 확인결과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2022-02-26 | 0010-2022-959 | 2022-04-01~2023-03-31 | 소상공인 |

<< < 1 > >>

**2** **확인서 수정** 국문확인서 출력 영문확인서 출력 공공입찰용으로 용도변경

#### 확인서수정

**3** **확인서 변경 후**

기업명: 힘내세요중소기업

대표자명: 홍길동

주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힘내세요중소기업 우편번호

지점사업자번호: [직접입력]

지점사업자주소: [직접입력]

용도: 전매등일

확인서지정표기여부:  예  부

영문확인서여부:  예  부

영문기업명: [입력란]

영문대표자명: [입력란]

영문주소: [입력란]

영문지점사업자주소: [입력란]

**4** 저장

**※ 수정 가능한 항목 :**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확인서 용도, 지점표기 여부. 영문확인서 여부

1. 수정할 확인서 선택
2. 확인서 수정 출력 클릭
3. '확인서 변경 후' 부분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 수정
4. 저장
5.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수정하였으면 사업자등록증 팩스 송부 Fax : 02-6974-1322



THANK  
YOU